

1 (신규)	고용노동부의 자료 중복요구 개선
관련부처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박경희 사무관(044-202-725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각종 행정자료와 통계조사간 동일한 자료 제출 중복 요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시간당임금 등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로 활용하는 통계조사로,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한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8020호)입니다. 통계청이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 간 유사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통계를 승인하므로 유사 및 중복조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에게 유사중복 조사항목처럼 보이는 것도 세부내용과 연계 항목 통계 등을 감안하면 유사중복 조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통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p>*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고용보험 자료가 임금으로 유사 중복처럼 보이지만, 고용보험에는 보수총액 임금자료는 있고, 임금세부 내역(기본급, 통상수당, 초과급여, 상여금 등)과 관련항목(근로시간, 교대제형태, 경력년수 등)은 없습니다.</p>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 (계속)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관련부처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044-202-7544)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및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근로감독관의 심사) 의무, 즉 근로기준법 제93조 철폐 근로기준법 제94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의 변경 내용에 '이익 변경' 및 '불이익 변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종합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조합)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근로자(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일부 사원에게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경우로 모든 사원에게 종합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의 새로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에 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시 노사 간 자율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에 신청 가능한 담당창구 설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방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제·개정 및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고절차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신고 시 범위반 여부, 근로자동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향후 취업규칙 효력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 방지 효과 ○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개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되,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사이에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1726 판결 참조)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참조) - 이에 대해 여러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 사이에 유·불리가 다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조건 또는 일부 근로자로서는 근로조건이 불리한 변경임은 명백한바, 상기 '1항'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법령의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불이익변경에 사회적 합리성 여부는 개별 취업규칙 개정 내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장의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09.4.24.)'에 불이익변경의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사례(판례) 참고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등은 현행 법체계상 최종적으로 민형사 절차 등을 통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인 만큼 고용노동부에 담당창구 설치는 부적절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해당 없음

3 (계속)	유급휴가의 금전보상 제한
관련부처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광철홍 사무관(044-202-7546)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취업규칙·노사협정·단체협약에서 현행 노동 기준에 준하는 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이라도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동의 의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개정(①연차유급휴가 상한일수 설정, ②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금전보상 의무 면제, ③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휴가제도(월차 휴가 등)의 철폐 또는 금전보상 대상에서 제외)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일정 범위 안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며, 이월된 미사용 일수는 금전보상 대상에서 제외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이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뢰보호 및 사용자의 자의적 계약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필요하므로 수용 불가 ○ 유급휴가의 금전보상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연차휴가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개선 추진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로 적립을 통한 휴가활용 및 연차휴가 적립을 통한 연속 휴가 사용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추진 ○ 노사 스스로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 적극 추진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김성태 의원, '16.5.30.발의) ○ 노사 스스로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지속 추진(연중)

4 (계속)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유연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광수연 사무관(044-202-7569)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사무관(044-202-7575)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SJC(서울재팬클럽)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 전체의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검토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의 사용기간 제한(2년)은 기업의 고용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간 균형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임 - 고용보호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거나 업무 또는 계약의 특성상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여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의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학업이수, 고령자, 전문지식 활용,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 ○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 등 관련 규정 완화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 이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여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정부는 상시·지속, 공중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기업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속적 사용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5 (신규)	국제거래에 관한 별지 서식 간소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와 김영현사무관(044-215-442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내용과 국제거래명세서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 발생 ○ (건의) 국제거래명세서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시 5-①. 국가별 보고서와 같이 거래 전체가 요약된 형태로 서식 개선 5-②.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해 제출의무 면제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u><건의 5-① 관련></u>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현재도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별 국제거래 현황 등 이전가격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체적인 요청 내용이 없어 검토 곤란</p> <u><건의 5-②와 관련></u>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두 서식의 제출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차이가 존재하여 제출의무 면제는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식)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는 법인 전체 조직구조, 국제거래 현황 등에 대한 서술식 작성 위주, 국제거래 명세서는 국제거래 세부현황에 대한 계량적 정보 제출 ○ (정보의 구체성)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소규모 국제거래(재화 10억, 용역 2억 이하)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6 (신규)	관세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추가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성용욱 서기관(044-215-441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관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의 제기만 가능하나, 행정소송에 앞서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도 허용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관세법 개정 <input type="checkbox"/>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결청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번 더 거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18년도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input type="checkbox"/> '18년도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 (2019.1.1. 시행예정)

7 (신규)	관세평가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신중한 과세
관련부처 및 담당자	관세청 법인심사과 박재선 사무관(042-481-798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관세조사시 기존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고액의 관세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부담이 커지므로 품목분류의 변경에 따른 과세에는 신중한 기초를 유지해 주기를 바램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관세청은 기업의 품목분류로 인한 대규모 추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관세법 제86조)를 운영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또한 관세조사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협의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사처분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무리한 추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8 (계속)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언어의 선택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영현사무관(044-215-442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통합기업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건의) 한국어 번역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성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 규정 마련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합기업보고서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세원관리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글로 제출 받을 필요 <input type="checkbox"/>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자국어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p>* (자국어 제출)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등 (자국어 또는 영어 제출) 일본, 멕시코</p>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9 (계속)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실무 개선
관련부처 및 담당자	관세청 법인심사과 박재선 사무관(042-481-798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일부 기업으로부터 '관세조사의 장기화(2년 초과)로 인한 '부당징세의혹의 야기'에 대한 개선요망이 있으므로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더욱 세심한 요구사항의 설명·조정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관세조사는 국제거래 특성상 복잡한 거래형태, 다양한 과세자료 제출지연 등이 발생하여 일부 건은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기간에 처리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 장기화 방지를 위해 전체 조사기간을 함께 통지하도록 지침을 시달('18.1.15)하였고, '18년 상반기 중 동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예정 <input type="checkbox"/> 이처럼 우리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근본적으로 장기화 방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 협조도 필요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0 (신규)	당발송금 및 타발송금시 관리기준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와 이재화 사무관(044-215-475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당발·타발 송금시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완화 (예 : 확인 의무 면제 금액 인상)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 지급수령에 대해 외국환 은행에 당해 지급수령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외 탈세, 해외재산도피 등을 위한 불법 자금유출 방지 및 자금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 정부는 상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외거래 규모 증가 및 거래 편의 제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은행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지급수령 금액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 * (~'15) 1,000불 초과, ('15~'17) 2,000불 초과, ('17~) 3,000불 초과 ○ 특히, 작년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지급수령 금액을 기존 2천불에서 3천불로 상향한 바 있음 ⇒ 은행의 확인 의무 완화 조치 시행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감안시 추가 의무 완화 추진은 신중할 필요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1 (신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의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와 이재화 사무관(044-215-475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이 주채권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직접투자 송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계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 * (예)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의 재무 현황, 재무비율, 영업 전망 및 리스크 등의 정보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50조)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주채권은행만 지정거래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 등의 거래를 하도록 한 것도 주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기업체에 대한 재무 정보 등의 모니터링 및 신용위험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임 *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에 따른 해외사업 위험요인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재무구조 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2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규제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최성규 사무관(02-2100-2655)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P통한 청산시스템 도입('14.6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도입('17.9월)으로 결제리스크가 현저히 완화됨 ○ 장외파생상품 위험액 관련 금투업규정(위험액을 자본금의 30% 이내로 유지)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다각화한 트레이딩 상품의 개발 니즈(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파생상품 개발 등)에도 반함 ○ 동 규제는 은행에는 적용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의문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30%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본 규제를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166의2①, 금융투자업규정 §5-49) ○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대규모 시장충격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재무상황 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input type="checkbox"/> CCP 청산시스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등으로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나, 장외파생상품에 따른 위험액 관리기준을 폐지할 수준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P에서 청산되는 장외파생상품이 전체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17년말 기준 약 24% 수준)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의 경우 거래잔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3조원 이상) 적용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BIS), 유동성(LCR, NSFR), 레버리지(leverage ratio),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산정표준방법(SA-CCR)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건전성 규제를 운영 중인 만큼 권역간 형평성 문제로 보는 것은 곤란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3 (신규)	청탁금지(일명 김영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판단 기준 예시
관련부처 및 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권기현 서기관(044-200-764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상 외국은행 지점의 지점장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거래 또는 지불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취급기관의 대표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은행 고객과 접할 시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 받는 적용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조희한바,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접대와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는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상관행으로서의 거래관계 조성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내 기업의 원활한 외화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무수행사인 판정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다음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알려주기 바람 (예1) 과거 외환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해당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경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및 판단기준 (예2) 과거 해당 위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미래에 위탁업무를 희망하지만 위탁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아직 없는 경우의 공무수행사인의 해당 여부 및 판단기준 ① 구체적인 약정 의사표시가 있으나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경우 ② 위탁업무에 관한 의사표시 없이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상담만 한 경우 ③ 거래처 상대방이 외환 관련 담당자가 아닌 경우 (예3) 동일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고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거래관계가 없는 부서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는가?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p>및 조치계획</p>	<p>□ (검토의견)</p> <p>(예1) 법령에 따라 외환업무 등을 위임·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의 지점장(대표자)이 더 이상 지점장이 아닐 경우 지점장의 지위를 면하게 되는 시점부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p> <p>※ 해당 외국은행 지점의 소속 구성원 개인(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외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p> <p>(예2) 법령에 따라 외환업무 등을 위임·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의 지점장(대표자)이라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시점부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게 됨</p> <p>① 해당 위탁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p> <p>②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상담만 한 정도로는 아직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p> <p>③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의무를 부담함</p> <p>(예3)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의무를 부담함</p>
<p>추진경과 및 향후일정</p>	

<p>14 (계속)</p>	<p>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금출연의무 적용제외 및 요율 경감</p>
<p>관련부처 및 담당자</p>	<p>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송희경 사무관(02-2100-2862)</p>
<p>건의내용</p>	<p>□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p> <p>□ (건의내용) 신용보증제도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채권에 대한 기금출연을 의무화되어 있어 신용보증제도 이용도가 낮은 외국 은행 입장에서는 융자업무에 대한 부담이 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의무 면제 또는 기준요율과 본 제도를 이용한 융자 및 보증이행잔액 등을 반영한 가산요율 설정 등의 요율체제로 제도 수정 요청
<p>검토의견 및 조치계획</p>	<p><input type="checkbox"/>기조치 <input type="checkbox"/>수용 <input type="checkbox"/>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미수용</p> <p>□ (검토의견)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시 부실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로 성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를 신용보증제도로 보완하여 자금을 재배분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p> <p>□ 국내은행의 외국지점도 영업활동 중인 해당국가의 은행과 동일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출연 부담을 완화할 경우 국내은행의 상품경쟁력 약화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국내은행에 역차별 발생 <p>□ 현재 금융회사등이 부담하는 출연금과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감안하여 기준요율에서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대부분의 외국은행들은 기준요율인 1만분의 22.5보다 낮은 요율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p>추진경과 및 향후일정</p>	

15 (계속)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심면 조사역(02-3145-7935)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하거나 사후적 점검을 허용 ○ 관리대상 외환파생상품거래의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통화선도, 외환스왑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이하 '동 기준')은 '08년 수출입 기업들이 과도한 환헤지 거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이른바 키코(KIKO)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1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2>) 제정 시행 ○ 기업투자자의 과도한 환헤지 거래와 투기적 외환파생상품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위험회피대상금액(수출입 실적 등)의 100% 이내로 제한 <input type="checkbox"/> 동 기준에 따른 점검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하거나 사후적 점검을 허용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자의 과도한 환헤지 거래와 투기적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 초래 <input type="checkbox"/> 한편, BIS 등 국제감독기구도 장외외환파생상품을 통화선도,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통화선도 및 외환스왑을 동 기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 '17년중 국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통화선도 및 외환스왑 거래 규모는 299.0억달러로 전체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310.4억달러)의 96.3%를 차지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6 (계속)	예금보험요율 경감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성미라 사무관(02-2100-290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한국은 예금보험료율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크므로 건전성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변화, 위험수준에 따라 요율을 변경하는 방식 등을 고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와 금융기관 쌍방에 리스크를 회피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개선이 필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한국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지표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14년부터 운영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도는 고정보험료율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보금융회사가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건전성이 제고된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함 ○ 또한, 예금보험료율의 경우 국가별로 그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한국의 은행업권 보험료율(0.08%)이 높은 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형·복합 : 총부채의 0.015~0.40% / 소형 : 0.015~0.30% (캐나다) 보호예금의 0.075%~0.33% ○ 한국은 '09년부터 금융회사 부실시 예금대지급과 금융회사 정리에 소요되는 재원인 예금보험기금의 하한 및 상한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적립시 예금보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고 있음 ○ 따라서, 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위험수준, 적립수준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는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하는 수용 곤란 * 참고로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차등폭은 '21년까지 확대할 계획(±10%)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7 (계속)	국내에서의 외화 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 용인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이재화 사무관(044-215-475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 사용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외 사용 목적이 아닌 자금의 경우 외화 대출이 불가능한바, 외투기업이 한국 내에서 외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동 용도 제한을 철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불필요한 외화수요 증가에 따른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외화차입은 외채 증가를 가져오며 금융불안 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경제불안 등 글로벌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직접 차입이 어려운 점, 국산 설비산업의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한도 내에서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8 (계속)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철폐 또는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이재화 사무관 (044-215-4751)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김기봉 과장(02-759-5762)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철폐 또는 안정자금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차입에 대한 부담금의 추가 경감조치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 지점은 본 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해당 부담으로 힘든 경쟁환경에 노출 ○ 당해 비용은 대출처인 일반기업, 현지금융기관 대상의 대출 이율에 전가되기 쉬워 한국경제 및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 외환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외화차입이 억제되고 외채 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화부문의 거시건전성이 개선 ○ 한편, 현행 제도는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본점으로부터 장기로 조달하는 자금)를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 ○ 아울러 외은지점은 국내은행이 적용받는 외환부문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동 제도의 철폐 또는 완화 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채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LCR, 중장기외화자금관리비율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9 (계속)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구자욱 사무관 (042-481-5397)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극히 쉽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보호의 대상임을 특허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기 바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은 현행 특허법에서도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장치',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형태 청구항 ○ 또한, '14.7.1.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형태의 청구항도 인정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한편, 특허기술이 포함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의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18.5.14.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된 바 있음 <input type="checkbox"/>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0 (계속)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의 답변기간/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기간의 장기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신원혜 서기관 (042-481-5398)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기간을 3~4개월로 연장,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청구,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장기화, 차선책으로 지정기간 경과 후라도 연장가능기간 내에 있으면 답변과 함께 가능하도록 해주기를 바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국가별로 기본답변기간(2~4개월)에 차이는 있으나, 연장가능기간을 합치면, 그 합은 6개월로 차이가 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한국</th> <th>일본</th> <th>미국</th> <th>유럽</th> </tr> </thead> <tbody> <tr> <td>기본답변기간</td> <td>2개월</td> <td>내국인 60일 외국인 3개월</td> <td>3개월</td> <td>4개월</td> </tr> <tr> <td>연장가능기간</td> <td>원칙적 4개월</td> <td>내국인 1개월 외국인 3개월</td> <td>3개월</td> <td>원칙적 2개월</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국가별로 답변기간 및 연장제도에 차이가 있어, 제도의 장·단점 및 출원인 유·불리를 획일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함 <input type="checkbox"/> 한국은 기본답변기간이 2개월로 짧으나, 그 후 4개월까지는 연장 신청시 자동 승인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인정 * 선행기술과의 비교실험, 서류의 번역 등 - 한국은 4개월의 연장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 가능(일본·미국은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한국·일본은 거절결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추후 재심사의 기회가 있으나, 미국·유럽의 경우는 출원 취하나 포기로 간주하여 절차를 종료 <input type="checkbox"/> 기본답변기간 장기화 여부는 심사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권리 불확정기간 장기화(제3자 감시부담), 내·외국인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기본답변기간	2개월	내국인 60일 외국인 3개월	3개월	4개월	연장가능기간	원칙적 4개월	내국인 1개월 외국인 3개월	3개월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기본답변기간	2개월	내국인 60일 외국인 3개월	3개월	4개월											
연장가능기간	원칙적 4개월	내국인 1개월 외국인 3개월	3개월	원칙적 2개월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1 (계속)	외국어출원의 인정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구자욱 사무관 (042-481-5397)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판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특허출원 시 인정되는 외국어는 영어뿐만 바, 일본어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기를 바람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영어 이외의 언어로 확대는 한국의 심사환경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특허심사관의 심사처리건수는 일본·미국·유럽 등에 비해 매우 과다한 상황으로, 심사품질 저하 우려도 있는 상황 ○ 이러한 환경에서 언어를 확대할 경우 심사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될 우려 * 명세서의 보정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어 명세서 기준으로 보정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추가적 부담 발생 ○ 따라서, 언어 확대는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심사품질 고도화 등을 달성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2 (계속)	무효심판소송시 이유 및 증거 보충의 제한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구자욱 사무관 (042-481-5397)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판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특허법 등에서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없도록 개정해 주기를 바람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동 사항은 무효심판 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 제한(무효 이유 및 증거 보충 제한)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무효심판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 및 증거도 취소소송에서 자유롭게 제출 가능 ○ 전 단계인 무효심판만 제한 시, 심판은 바이패스하고, 소송에서 새로운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특허권자에게 더 불리할 우려 ○ 따라서, 취소소송 시 심리범위 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무효심판에서 이유 및 증거 보충의 제한 여부도 검토 가능 ○ 이에 대해 사법부와 입장차가 있는 만큼, 기업 수요 및 국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3 (계속)	수출에 대한 권리행사의 가능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강원길 서기관 (042-481-5736)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수출'을 실시행위에 포함시켜 제조, 양도 등과 동일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를 바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에 관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는 침해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수출의 전제 행위인 생산·사용·양도 행위는 특허권 침해 행위이므로 특허법에 따라 권리행사 및 사전 예방 가능 <input type="checkbox"/>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 행위 중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행위 제제는 가능하나, 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출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겠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4 (계속)	간접침해규정의 확충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강원길 서기관 (042-481-5736)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전용부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적으로(특허발명이라는 사실 및 침해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인정하도록 성립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바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非전용품 및 非물건(3D 프린팅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접침해 인정 범위를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간접침해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침해 수단의 전용성 요건을 완화하고, 물건뿐만 아니라 디지털 수단에 의한 간접침해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침해규정 정비 ○ 간접침해 범위 확대로 인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전용 대상 간접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인지요건*을 부가 <p>* 특허발명이라는 사실 및 침해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간접침해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에만 적용</p>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5 (신규)	일본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애완동물 사료의 수입 및 검사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석재사무관(044-201-2359)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일본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애완동물 사료는 한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 2. 한편, 일본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애완동물 사료에 대하여 ELISA(효소면역측정) 검사를 한국에서 실시하여 반추동물의 정성 판정을 하고 있다. 상기 검사의 순번 대기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입 기간도 3 주 정도로 매우 길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OIE(국제수역사무국)는 일본과 한국을 모두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BSE Risk)’으로 인정했다. 또, 애완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반추동물 유래 원료(육분)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외곽단체인 FAMIC 의 인정을 받은 일정 시설에서만 제조되므로 육분에 광우병 위험은 없다. ○ 개선 요망 위 사항에 따라 일본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수입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 한국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ELISA 검사는 수입 애완동물 사료에 반추동물 단백질 함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반추동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육분에는 광우병 위험이 없어 검사의 존재 의의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검사를 철폐 또는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애완동물사료의 반추동물유래단백질 검사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고시 제2017-42호), 제3조 및 [별표1]에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여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지정검역물 중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는 지정검역물 제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호)」 제34조 및 [별표18] 애완동물 사료 검역방법으로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사료수입신고필증(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에 한하며, BSE 불검출 여부가 기재)”을 고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입사료 검정기관은 BSE 발생국가에서 수입되는 애완

	동물사료의 경우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를 확인함과 동시에 연 1회 이화학적인 검사(ELISA 및 PCR)를 통해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함유여부를 분석하고 있음 귀 SJC 측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FAMIC에서 인정하는 시설에서 제조되는 육분은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것과 일본은 한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무시국이라는 점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검역당국이 애완동물사료의 수입위생조건을 합의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6 (신규)	일본산 애완동물 사료수입시의 증명제도 합리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석재사무관(044-201-2359)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일본산 애완동물 사료를 한국에 수출할 때 방사선 물질에 관하여 일본 정부(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 개선 요망 일본산 수입 애완동물 사료에 대하여 일률적인 방사선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보다 생산시설의 소재지(도도부현)별로 다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2011.3.11부터 일본 4개현에 대한 수입금지 및 그 외 43개현 수입 전수검정 중이며, 방사능검사증명서 요구는 '13.12.26일부터 적용 양어용 사료와 어분은 수산물과, 그 외 품목은 농산물과 동일하게 일부 현에 대해서만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시행 중이며, 검사기준은 일본의 사료 검사기준을 적용하되 일본내 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별도의 기준 적용은 일본내 관련 기준 개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수입금지 4개 현 :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후쿠시마 * 검사기준 : (세슘) 370Bq/kg, (요오드) 300('13.9.9 이전 국내식품기준) * 양어용 사료와 어분은 수입금지 4개현 외 추가 12개현, 그 외 품목은 수입금지 4개현 외 추가 9개현에 요구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27 (신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유봉현 사무관(044-202-7738)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상 한국 기업은 업태를 불문하고 분기당 3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제조공장·공사현장·화학물질 보관 등 상시 물리적인 위험성이 있는 업태 이외에는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또는 실시 빈도 및 시간을 단축 필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재해율이 낮은 일부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교육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교육대상별로 사무직과 사무직이외의 근로자등에 대한 교육시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음 ○ 이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input type="checkbox"/>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육을 1/2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면제나 실시빈도, 시간단축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험교육시간은 정기교육시간의 2배로 인정해주는 고시개정안을 현재 추진중임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고시개정안 규제심사 중임

28 (신규)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재검토
관련부처 및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해영 사무관(044-203-4246)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사용에 따른 프린터 및 복합기(복사기) 제품의 품질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요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사용에 따른 프린터 및 복합기 품질 저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는 토너카트리지를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기 위해 원제조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원제조업체로부터 상기 건의내용과 같은 우려를 전달받은 바 있음 - 이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재제조 토너카트리지로 인한 프린터 및 복합기(복사기) 고장 발생 사례(분쟁사례)를 원제조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전달받은 바 없음 ○ 우리부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프린터 및 복합기(복사기)의 품질 저하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제조 토너카트리 시험방법에 관련 시험항목을 추가하고자 원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음 - 또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은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업체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음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제조업체의 지식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부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에 재제조 업체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토너카트리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불법 수입 모조품을 퇴출시키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품질성능(프린터 및 복합기(복사기) 오염도 평가 포함)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마련 *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input type="checkbox"/> '18.5.9,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18.6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18.10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제정 고시(KS) <input type="checkbox"/> '18.12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정 고시

29 (신규)	KC 인증 면제 신청절차 완화(중일 구성품 또는 부품 반복 신청 시)
관련부처 및 담당자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김청원 사무관(061-338-4710)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전파법 제58조3제1항제1호,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제1호사목에 따라 구성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KC 인증 면제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구성품 또는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면제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확인을 한번 받은 실적이 있는 구성품 또는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 시에 면제 확인 절차 이행을 통해 발행된 승인번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수입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르면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표시 그 밖에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수입통관에 필요한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기관에서 위 고시에서 규정한 면제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단계에서의 요건확인인 해당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기자재의 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면제요건 확인 또한 면제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div>

	<p>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사목의 기자재는 PC와 PC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해당됨으로 면제절차를 생략할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들이 수입·유통되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다른 면제사유로 요건면제를 받아야 하는 기자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0 (신규)	군 납품 입찰 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관련부처 및 담당자	국군복지단 사업지원과 중령 이석현(02-2225-6310)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담배제품 입찰 시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 차별 철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담배는 일반적인 기호품과 달리 장병들의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수한 기호품이며, 전투 스트레스 해소 등 군의 사기와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품으로 유사시에도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제조 물품으로 한정이 필요함</p> <p>가. 만약 전투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특정 담배공급이 중단될 경우 장병 개인의 성향에 따라 금단현상, 불안,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평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함</p> <p>나. 이에 따라, 담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가의 물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중점관리물자로 지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유사시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담배 제조업체를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바와 같이, 담배는 전시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물품임</p> <p>다. 따라서, 전·평시 운영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의 특성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직접 제조 및 판매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p>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1 (계속)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가 같은 종류의 타사 제품군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
관련부처 및 담당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허황 주무관(044-201-7392)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사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회수·인계 및 재활용 처리시 재활용실적으로 인정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입법취지를 검토해 볼 때,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타사 제품의 재활용실적 인정은 부적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으며, ○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출고량 등에 따라 산정된 회수 및 인계·재활용 비용을 공제조합에 분담금으로 내고 있음 ○ 또한,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매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받고 이를 달성하여야 함 ○ 따라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동으로 타사 제품을 포함하여 회수 및 인계·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사 제품만을 회수 및 인계·재활용 하는 것이 타당함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2 (계속)	일반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관련부처 및 담당자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준식 주무관(044-201-4022)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서 '일반 전자서명'도 '공인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법개정 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6으로 정한 위탁화물 관리책임 확인을 위한 화물운송장 제출 시 '일반 전자서명'에 의한 것도 '공인 전자서명'의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토록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3의 위탁화물의 관리 책임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이중적인 의무부과 해소 등 규제완화를 위해 2017.3.21. 해당 법률 조문 삭제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률 조문 삭제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해당 조문 (시행규칙 제21조의6) 삭제 절차 진행 중 * 하위법령 입법예고('17.11월), 규제심사('18.4월), 법제심사('18.5월), 개정·공포('18.6월)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8.6월)

33 (계속)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는 '환경성보장제' 의 재활용 의무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련부처 및 담당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허황 주무관(044-201-7392)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에 대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 운영 중 *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13호, 2017.10.2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동작하는 기계·장비의 결합 또는 대형 조합으로서, 고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설치·해체·사용되는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설비 </div>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4 (신규)	사전검토 대상 확대 - RMP
관련부처 및 담당자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이철승 주무관(043-719-2635)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 도원임 연구관(043-719-271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수입 의약품의 경우, 신제품에 대한 최초 승인 이후에 적응증 추가 등의 허가변경을 하기 위해 사전검토를 거친 후 단순허가변경(처리기한 20 일) 절차를 밟고 있는데, RMP(위해성 관리계획) 제도 도입에 따라 적응증을 추가할 경우 RMP 자료 승인이 필요한데, RMP는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의 허가 변경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은 의약품 개발·R&D과정에서 발견된 위해성을 평가하고 시판 중에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이며, - 환자가 보다 유익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전 주기에 걸쳐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위해성을 규명·평가 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하여야 하므로, -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RMP가 검토·평가되어야 하므로, RMP만을 허가 전에 독립적으로 검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Risk Management Plans(RMP) ○ 또한, RMP제도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각 국의 규제 당국에서도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심사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기적 관리를 실시 중에 있음 * 일본('12년 시행), 미국('05년 시행), 유럽('06년 시행)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5 (신규)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한 임상자료요건 완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이철승 주무관(043-719-2635)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 도원임 연구관(043-719-2711) 식약처 바이오심사조정과 남경탁 연구관(043-719-507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중 '기존의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하게 안정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3 상 임상시험결과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DA, EMA 등과 같이 유병률과 비임상/초기임상자료만 있으면 희귀 질병용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희귀질환자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대체 의약품보다 현저하게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3상 임상시험결과 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질환, 기 지정된 의약품이나 대체 치료제 현황 그리고 신청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6 (신규)	일의약품첨가물규격 및 일본약국방외의약품규격의 허용
관련부처 및 담당자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이근아 주무관(043-719-260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일본에서 JPE(Japanese Pharmaceutical Excipient), JPC(Japanese Pharmaceutical Codex) 규격에 따라 설정된 첨가제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를 받을 때에는 별첨규격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JPE와 JPC를 공정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일원화된 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램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에서 해외국의 의약품 성분 규격 인정은 해외국과 상호 주의 관점에서 동등 이상의 규격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특정 해외국 의약품 성분 규격을 일방적으로 인정(등재)하는 것을 어려움 - 다만, 외용제 첨가제의 경우 일본약전, 일본의약품부외품원료규격, 일본의약품첨가물규격에 등재된 성분은 현재도 인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12조제3항제2호사목)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7 (신규)	신약의 약제결정 신청 시 소아 희귀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
관련부처 및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공지현 차장(02-2182-857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소아-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약제로 평가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말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치료적, 경제성 가치가 인정되는 신약만 급여하고 있으나,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면제 제도를 도입 - 대체제가 없고 환자수 소수 등 근거생성이 곤란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면제 및 'A7국가의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급여적정성 인정하고 있음 - 소아 희귀의약품의 경우 상기 사항에 해당하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있음 ○ 또한, 희귀질환 의약품의 조속한 등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신청 후 약 10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하는 등 의료 미충족 요구(또는 사회적 요구)가 크고 고가인 약제 대상으로 급여율 향상 및 등재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임.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38 (신규)	신규약제(요양급여 미결정 상태)가 기존 급여대상 약제와 병용 투약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일반 원칙 수립 요청
관련부처 및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전미정(02-2182-8526)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이미 허가를 받은 적용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암제가 보험 수재되기전에는 이미 수재된 병용약제까지도 비급여가 된다. Kyprolis Inj.(carfilzomib)와 Perjeta Inj. (pertuzumab)사례와 같이 병용약제의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결정은 일반원칙 없이 사례별로 판단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품목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병용약제의 경우, 기존 요법에 비해 약제비가 명백히 증가하여 생존기간연장 효과가 클수록 비용대비효과성 입증에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 급여 약제까지도 비급여로 사용하게 되어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경우,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여 신청약제만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항암제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으로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신규약제(요양급여 미결정 상태)이거나 기등재약제의 허가사항 내이지만 공고한 세부인정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input type="checkbox"/> 이러한 비용부담 결정이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요구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로, <u>비급여 약제와 병용하는 병용요법의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심의 원칙을 적용(2014.7.9.이후)하여 검토하고 있음</u>

	<p>[비급여 약제와의 병용요법에서 병용약제 급여 관련 심의 원칙]</p> <p>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이익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 약제로 결정된 경우 다음 ①, ②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비급여 약제와 병용하는 약제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음(단, 병용약제 급여로 인한 재정영향에 따라 사례별로 적용)</p> <p>① 임상근거 수준이 높고 대체가능 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한 경우 ② 급여되는 병용약제와 투여대상 등 적용기준이 동일한 경우</p>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기검토 완료

39 (신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제품진열금지' 철폐
관련부처 및 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가은 사무관(044-202-2822)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2017년 3월 의원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소매점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신 소매업의 철저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흡연 방지 캠페인 실시 고려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FCTC 13조(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조항 및 이행 가이드라인에 의해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 및 시각적 노출을 금지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협약 비준 5년 이내 이행 의무를 가짐 ('05년 5월 비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FCTC 13조 가이드라인 13</p> <p>담배제품의 판매점에서 어떠한 판촉의 효과도 유발되지 않기 위해서, 당사국은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여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전면 금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판촉의 요소가 없이 제품목록과 가격에 대한 문구만을 허용해야 한다. 협약 제13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금지는 여객선, 비행기, 항구 및 공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기준, 이미 해외 58개국에서 판매점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 판매점 내 진열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담배광고 금지는 흡연율 약 6.3%p 가량 감소 효과가 있고, 담배 광고에 노출될수록 청소년의 흡연 확률도 증가함(Lovalto, C et al., The Cochrane Library, 2004) ○ 국내 관련법에 의해 담배 소매점에서는 철저하게 연령 확인 후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미 청소년의 흡연 시작 방지를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p>*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및 제59조(벌칙)</p>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0 (신규)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Patent Linkage)의 문제점 개선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의 명확화)
관련부처 및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김명미 사무관(043-719-282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심결 내용과 실제 허가내용이 다른 후발의약품에 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불가능함을 명확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① 제50조의7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2. 제50조의7 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자 중 동재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일 것. 다만,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p> </div>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50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허가 받은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후발의약품의 허가사항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심결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불가능함 - 이를 위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시 인용심결문 상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징과 허가사항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만 허가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도 조치 불필요 - 참고로, 동 내용은 관련 해설서에도 설명되어 있으며, 향후 업체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겠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15.07)】</p> <p>II.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p> <p>⑥-2.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p> <p>(2) 특허심판 또는 소송에서의 인용 심결 등 - 제2호</p> <p><중략>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후발제약사의 의약품이 특허권자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받은 경우 인용 심결의 대상이 된 후발제약사의 발명(확인대상발명)의 특징 모두가 허가를 받는 후발의약품과 부합하여야 한다.</p> </div>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1 (계속)	위험분담환급계약의 개선(부가가치세 과잉부담 해소, 후발약제의 위험분담환급계약 대상 허용)
관련부처 및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044-202-2756)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① 항암제 또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치료에 우수한 신약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고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도 중 환급형의 경우 환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 되어 부담이 되므로 개선요청 ② 최초 등재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등재된 경우에도 환자의 약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의 위험분담제 적용유지와 함께 후발약제에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약제 범위를 확대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 ① 위험분담제도 부가가치세 면제 : 수용근관 > ○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건강보험 보험자와 제약사가 서로 일부 분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 - 건강보험 보험자는 위험분담제(환급형)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제약사의 부가가치세 이중납부 등 조세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조세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위험분담제도 중 환급형은 외부에 공개되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을 달리 운영하는 이중가격제도로 제약사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선택되고 있고, - 환급금을 환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환급금의 안내, 관리 등 행정 비용을 별도로 제약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음

	< ② 위험분담제도 대상 확대(후발약제도 인정) : 수용근관 > ○ 위험분담제도는 비용 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약제등재의 일반 원칙, 건강보험 재정, 약가 투명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산업발전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상 미비점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2 (계속)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규정의 재검토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이민정 사무관(042-481-5412), 최승희 사무관 (042-481-8738)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규정의 재검토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특허권존속기간 연장규정 적용 대상의 확대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물질을 포함하는 신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연장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타기술 분야에 비해 과도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미국이나 유럽도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1회의 연장만을 허용하고 있음 ○ 제 2 의약품도나 개량된 의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시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신약에 비해 현저히 적어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3 (계속)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적정화 및 IMD 폐지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이민정 사무관(042-481-5412), 최승희 사무관 (042-481-8738)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적정화 및 IMD 폐지 필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의 적정화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89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규정된 허가 등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연장등록출원 시 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에 포함된 유효성분은 허가 등을 받은 형태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특허법 제95조(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의 해석 및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함.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4 (계속)	특허권 존속연장제도에 있어 외국임상시험 기간의 가산, 보완기간 등의 산업
관련부처 및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이민정 사무관(042-481-5412), 최승희 사무관 (042-481-8738)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특허권 존속연장제도에 있어 외국임상시험 기간의 가산, 보완기간 등의 산업 필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출원에 있어 연장기간 산정 시 외국 임상시험기간 인정여부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는 국내에서 특허권의 실시를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의 한도 내에서 연장해주는 제도로, 특허법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임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임상시험기간은 국내 의약품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임 ○ 외국에서의 임상시험은 해당국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시험이 아니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출원에 있어 연장기간 산정 시 품목 허가 신청관련서류의 보완기간 인정여부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보완요구는 일반적으로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발생은 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허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5 (계속)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Patent Linkage)의 문제점 개선 (판매금지처분 제외사유 삭제)
관련부처 및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김명미 사무관(043-719-282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판매금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이 존재하거나, 동일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경우 판매금지를 제외하는 조항의 삭제 요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받은 날(이하 "통지받은 날"이라고 한다)부터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5.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통지된 의약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이하 "동일의약품"이라 한다)로서 그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경우 가. 주성분 및 그 함량 나. 제형 다. 용법·용량 라. 효능·효과</p> <p>6.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이미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p> </div>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6 (신규)	한국 취업 일본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부처 및 담당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정재민사무관(044-202-363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한국에서 근로하는 일본인 근로자들이 연금수급권 10년을 채우기 전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인근로자도 이미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검토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국가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 ○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외국인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임 ○ 일본과는 보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 또는 양국 동시 자영자의 경우 일본연금에 가입중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 일본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정 개정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관련 관계부처 논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47 (계속)	일본 제품의 수입통관 시 샘플 제출에 관한 개선
관련부처 및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사무관(043-719-2210) 박철윤주무관(043-719-2211)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입 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방사능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통관단계 식약처 검사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 등 안전 관리를 하고 있음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위해정보에 따라 식약처에서 직접 실시하는 검사임 *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는 정부가 직접 검사하도록 함 - 안전관리를 위해 매 수입 시, 로트(제조일자)별 검체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체채취방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3~ 일본산 수입식품등에 대해 매수입시 방사능 검사 실시 ○ '11. 5~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13개현), 및 생산지 증명서(기타현) 첨부하도록 조치

48 (계속)	직장어린이집 제도의 재검토
관련부처 및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윤성희사무관(044-202-3553)
건의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의자) 서울재팬클럽(SJC) <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회사의 재정 부담 및 설치 후의 운영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 면제 등 개선 요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용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장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에 대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 비용을 지원할 경우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도 위탁보육과 함께 '14년까지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간주해왔으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의무 이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15년부터 폐지 ○ 정부는 이용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제도 개편 검토 및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 중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설치의무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유도를 위해 위탁보육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영유아보육법 개정) 검토 중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